

인간과 동물의 반려 관계에 대한 윤리적 소론

- 안내견 사례를 중심으로

소병철*

- 목차 -

- I. 들어가는 말
- II. ‘획득된 의무’로서의 반려동물에 대한 의무
- III. 안내견의 생애와 역할 개요: 출생에서 은퇴까지
- IV. 인간의 안내견 사용은 윤리적으로 정당한가?
- V. 나오는 말

|국문초록|

이 글을 통해 필자는 최근 들어 활발해진 동물 윤리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반려동물의 특수 사례인 안내견이 인간의 손안에서 다뤄지는 방식에 윤리적 부당함은 없는지의 여부를 밝히려고 시도했다. 맨 먼저 필자는 인간이 동물을 반려로 맞을 때 떠안는 ‘획득의무’의 두 가지 핵심을 지적했다. 그 중 하나는 ‘동물의 기본적 욕구를 돌볼 의무’이고, 다른 하나는 ‘동물의 삶을 가능한 한 개선할 의무’이다. 그렇다면 안내견은 이러한 의무들을 준수한 동물 사용 사례로 간주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려고 필자는 안내견이 길러지고 부려지는 전체의 과정을 일별하며 안내견은 임무상 ‘집중 장애’ 요인인 식욕과 변의, 호기심과 사교성 등의 동물적 본능을 반려인의 명령대로 억제하게끔 훈육된다는 중요한 사실에 주의를 환기했다.

그러나 필자는 이로부터 인간의 안내견 사용이 윤리적으로 부당하며 따라서 폐지돼야 마땅한 관행이라는 결론을 끌어내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 순천대학교 철학과 조교수

안내견은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윤리적 ‘고기능’을 수행하며, 이런 경우 필자는 장애인의 기본권과 안내견의 복지가 양립되는 조건을 적시하는 방향으로 문제 해결을 도모함이 가장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대응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조건은 안내견이 일상에서 당하는 ‘본능의 억압’을 최소한도로 제한하는 규범적 기준선 역할을 부여받는 셈이다. 이러한 취지 아래 필자는 그 조건을 두 가지, 즉 ‘인간은 안내견의 헌신을 반려동물에 대한 획득의무의 이행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것과 ‘안내견의 훈육에 물리적 강압이 사용돼선 안 된다’는 것으로 테제화해 제시했다. 이로써 필자는 안내견을 대하는 반려의 손길이 학대의 채찍으로 표변하지 않도록 인간의 행동들을 정제할 두 개의 윤리적 거르개를 만들어 내놓아 본 것이다.

주제어 : 반려동물, 획득의무, 안내견, 본능의 억압, 장애인의 기본권

I. 들어가는 말

이 글의 목적은 20세기 후반부터 서구 실천 철학계의 중요한 관심사로 부각된 동물 윤리(animal ethics)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처우의 문제를 ‘안내견(guide dog)’이라는 특수 사례에 집중해 다루어 보려는 것이다. 피터 싱어가 1975년 ‘동물 해방(Animal Liberation)’이란 제목의 선구적 저작¹⁾을 내놓은 이후로 꾸준히 축적된 그간의 동물 윤리 논의는 인간과 공통점이 많은 인간 이외의 동물들에게 도덕 공동체의 성원권을

1) 이 책은 1999년에 최초로 한국에 번역·소개되었고, 2009년에 출간된 제4판도 같은 역자에 의해 2012년에 번역·소개되었다. Peter Singer, 김성한 역, 『동물 해방』, 인간사랑, 1999; Peter Singer, 김성한 역, 『동물 해방』, 연암서가, 2012 참조.

부여해야 한다는 규범적 인식을 광범히 확산하고 심화하는 데 기여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도 식육 산업이나 동물 실험처럼 모진 학대와 도륙을 수반하는 기존의 ‘동물 사용’ 관행들이 공중의 비판적 시선에 노출되기 시작했고, 2008년 1월부터는 동물 보호법의 규제 대상으로 특정되는 등의, 작지만 의미심장한 변화들이 일어난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간이 곁에 두고 기르는 개나 고양이 같은 이른바 ‘애완동물(pet animal)’을 우리가 ‘반려동물(companion animal)’로 고쳐 부르기 시작한 것 또한 주목할 만한 변화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통용어의 변화에는 한 인간과 그 인간이 집에서 보살피며 기르는 동물의 관계를 이제는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일방적으로 소유하며 완애(玩愛)하는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양쪽이 서로에게 책임 있는 생활의 반려가 되어 주는 수평적 관계로 인식해야 한다는 규범적 성찰이 투영되어 있다. 이에 따라 오늘 날 집에서 동물을 기르는 사람들 대부분은 동물을 심심할 때 가지고 놀다가 짖증나면 방치하고 때 되면 태엽 감듯 밥 주면 그만인 (그리고 귀찮으면 안 줘도 무방한) 애완구로 여기는 태도를 양심의 가책이 없이는 유지하기 어렵게 된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인간이 인간 이외의 동물을 생활의 반려로 받아들인다 함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윤리적 의미를 갖는가? 나아가 시각 장애인의 반려로 받아들여진 안내견은 그러한 의미를 충족하는 무결한 사례로 간주될 수 있는가?²⁾ 반려동물의 특수 사례인 안내견은 (유능한 안내견인 경우) 주지 하다시피 반려인인 시각 장애인이 장애물을 피하며 안전히 보행할 수 있도록 돋는 기본적 역할과 더불어 시각 장애인이 집밖의 세상을 향해 당당한 발걸음을 내딛도록 돋는 사회화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안내

2) 필자가 아는 한 이 논제, 즉 ‘안내견’이라는 동물 사용 사례의 규범적 정당성에 관한 논제는 놀랍게도 어태껏 철학적 쳐녀지라 해도 무방할 전인미답 상태에 놓여 있었던 듯하다. 단적인 예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http://www.riss.kr>) 검색창에 ‘안내견’을 치고 검색을 실행하면 16건의 학위 논문, 23건의 학술지 논문, 140건의 단행본, 1건의 연구 보고서 등이 검색되지만, 이 가운데 철학 관련 연구물은 전무하고 대부분이 안내견의 심리적·의료적 효능을 입증하려는 도구적 합리성의 산물들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검색어를 ‘guide dog’ 같은 영문으로 바꿔 봐도 결과는 대동소이하다.

견으로 길러질 개들은 출생하는 순간부터 인간의 계획 아래 세밀히 관리되는 일련의 훈련 과정을 거쳐야만 그 모든 역할을 수행할 충분한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러한 훈련은 개에게 절대로 녹록치 않을 뿐 아니라 대개는 개과 동물의 자연적 본성이 발현되지 못하도록 억압하는 조건 반사적 ‘행동 교정’ 프로그램들을 포함하기 마련이다.

이처럼 안내견은 인간의 반려이되 특정한 ‘용도’를 갖도록 훈련된 반려란 점에서 일반적 반려동물과는 좀 다른 특별한 위상을 갖는 것처럼 보인다. 말하자면 안내견은 인간이 가족처럼 가까이 두고 보살피는 반려동물인 동시에 서비스 동물처럼 인간의 필요에 맞추어 소모되는 꾀착취 동물인 것도 같은 독특한 양가성을 갖는다.³⁾ 그렇다면 이러한 양가성에 윤리적 문제는 없는가? 인간은 자기 생의 ‘반려’를 그렇게 ‘사용’해도 좋은가? 확인하면 인간은 자신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동물을 모순 없이 ‘반려’로 여길 수 있는가? 필자는 본론에서 인간과 함께하는 안내견의 생에 초점을 두고 그러한 물음에 대답할 합리적 입각점을 모색할 것이며, 이로써 야생동물이 아닌, 인간 주위의 동물들과 인간이 관계 맺는 방식을 평가할 윤리적 기준의 한 범형을 제안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맨 먼저 인간이 동물을 반려로 입양하는 선택에 어떠한 윤리적 의미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본론의 첫걸음을 내디뎌 보고자 한다.

II. ‘획득된 의무’로서의 반려동물에 대한 의무

미국의 동물학자 제임스 서펠은 1996년에 출간된 ‘동물, 인간의 동반자

3) 필자는 2013년 9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가족과 함께했던 ‘페파 위킹(puppy walking)’ 자원봉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의식을 처음 갖게 되었다. 당시에 필자를 가장 당혹케 한 것은 전철과 버스, 거리와 건물에서 필자의 가족과 동행한 몸집 큰 래브라도 리트리버 종 강아지를 뭇사람이 찡그린 얼굴로 바라본다는 사실이 아니었다. 오히려 필자는 강아지가 계획된 ‘용도’에 최적화되도록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기다리라면 기다리는 법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봉사자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라는 사실, 그리고 이 임무와 애정 어린 보살핌의 의무를 양립시킬 방법을 알 수 없는 윤리적 혼돈 때문에 더 큰 당혹감을 느꼈다.

(In the Company of Animals)’란 제목의 저서에서 “애완동물 소유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조사에서 소유자들은 대부분 ‘동반자 관계’ 또는 ‘우정’을 애완동물을 기르는 주된 이유로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며 “기본적으로 애완동물 소유자들은 자기 동물을 객체로 여기지 않고 주체로, 즉 가까운 친구나 인척처럼 애정 어린 관계를 나눌 수 있는 명백한 인격체로 여긴다”⁴⁾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처럼 두터운 애정의 유대는 해당 동물의 반려인이 그 동물을 세상 그 어떤 동물과도 다른, 특별한 의무의 대상으로 인식한 데서 연유한 현상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 특별한 의무감은 어디에서 생기는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최근 들어 ‘애완’을 대신해 상용되기 시작한 ‘반려’라는 수식어 자체에 이미 암시되어 있는 것 같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인간이 자기를 둘러싼 자연 생태계의 건강과 생물 종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의무는 있어도 개체로서의 세상 모든 동물을 주변의 허다한 위험으로부터 지켜 줄 직접적 의무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를테면 배고픈 사자의 표적이 된 얼룩말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출해야 한다고 느끼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정당한 절차와 경로로 특정 동물 개체를 가정에 입양해 생활의 반려로 삼기로 마음먹었다면, 이때부터 우리는 그 선택이 가져올 새로운 윤리적 관계를 그 동물과 맺기로 결의한 셈이며, 이로써 그 동물을 입양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련의 보호 의무를 일부러 지기로 다짐한 셈이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 일반에 대해 ‘인간을 해쳐선 안 된다’는 정도의 보편적·소극적 의무를 갖지만, 비인간적 해악에 노출된 특정 개인을 돋기로 결의하면 그 때부터 ‘그 사람의 안전을 지켜 줘야 한다’는 특수적·적극적 의무를 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마크 롤랜즈는 2002년에 출간된 ‘동물의 역습(Animals Like Us)’이란 제목의 저서에서 인간이 특정 동물 개체를 위해 자발적으로 떠안은 이 특수적·적극적 의무를 인간의 선택과 무관하게 타당한 보편적·소극적 성격의 ‘자연의무’와 대비해 ‘회득의무’라고 부를 것을

4) James Serpell, 윤영애 역, 『동물, 인간의 동반자: 동물과 인간, 그 교감의 역사』, 들녘, 2003, 156쪽.
1996년 당시의 서펠은 ‘반려동물’이란 말보다 ‘애완동물’이란 말에 더 익숙했던 것 같다.

제안한다.

[…] 애완동물의 경우에는 새로운 형태의 의무가 등장한다. 바로 획득 의무이다. 애완동물을 입양하여 집으로 데리고 가는 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행동이다. 이 덕분에 우리는 야생동물에 대해선 갖지 않는, 동물에 대한 부가적인 의무를 스스로 획득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농장, 실험실, 동물원에서 기르는 동물에 대해서는 획득의무를 전혀 지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그런 동물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획득의무를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지, 애완동물의 경우에는 우리가 의무를 손수 획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인정하기가 훨씬 쉽다는 것뿐이다. 그래서 애완동물에 대한 논의는, 우리가 동물에 대하여 획득한 의무가 무엇인지 생각해볼 수 있는 유용한 기회를 제공한다.⁵⁾

이것은 요컨대 우리가 동물을 반려로 맞아들일 ‘자연의무’는 없지만 특정 동물 개체를 반려로 맞아들일 결심을 했다면 여기에 상응하는 ‘획득의무’를 감수하기로 다짐한 것과 다름없다는 뜻을 내포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떠한 의무들이 그러한 획득의무의 목록에 포함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의 실마리는 아마도 인간과의 관계에서 여지없이 드러나는 동물의 실존적 무력함에 있지 않나 생각된다. 단적으로 말해 인간의 가정에 입양된 동물의 삶은 입양한 사람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보호받을 길이 없는 철저한 의존성을 갖는다. 그러한 의존성의 가장 명백한 표지는 동물이 인간의 것과 동등한 말과 글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벙어리’요 ‘까막 눈’이라는 사실일 것이다. 동물은 복잡하고 정교한 언어와 문자로 생각과 감정을 전달할 능력이 없어서 인간을 상대로 자신의 고통스런 처지를 호

5) Mark Rowlands, 윤영삼 역, 『동물의 역습』, 달팽이, 2004, 306쪽. 2002년 당시의 롤랜즈도 ‘애완동물’이란 말에 더 익숙했던 것 같다. 그가 의도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책의 원제목 ‘Animals Like Us’는 ‘동물을 우리를 좋아한다’는 뜻으로도 ‘우리와 동등한 동물’이란 뜻으로도 읽히는 중의성을 갖는다. 그런 점에서 ‘동물의 역습’이란 번역서 제목은 두 가지 뜻 중 무엇과도 부합하지 않는, 매우 생경한 느낌을 만들어 낸 듯하다. 그래서인지 이 번역서는 2018년에 훨씬 더 적절한 제목을 단 개정판으로 재탄생했다. Mark Rowlands, 윤영삼 역, 『동물도 우리처럼』, 달팽이, 2018 참조.

소할 수도 없고 인간이 자기를 다루는 잔인한 방식에 대해 인간이 들으면 납득할 만한 윤리적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다.

하지만 이러한 동물의 무능과 인간의 상대적 유능은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대개는 호혜적이지 않음을 보여 주는 증거일 뿐 인간이 동물을 함부로 다뤄도 된다고 생각할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말 못하고 글 모르는 것난아이를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된다. 주지하다시피 것난아이와 어린아이, 지적 장애인과 치매 노인 같은 이른바 ‘가장자리 인간(marginal human)’의 사례들은 도덕적 행위자(moral agent)와 도덕적 수동자(moral patient)의 관계가 능력의 동등과 여기에 기반한 행위의 호혜적 교환을 필요조건으로 하자는 않음을, 따라서 언어적·도덕적 행위 능력을 결여한 인간 부류에게도 도덕 공동체의 성원권이 주어져야 마땅함을 보여 주는 본보기로 간주된다. 그렇다면 그러한 인간 부류처럼 의식이 있고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동물도 그러한 무능을 이유로 도덕 공동체의 성원권을 박탈당할 수는 없는 것이다.⁶⁾

더욱이 인간은 오랜 세월에 걸쳐 곁에 두고 길러 온 개나 고양이 같은 집짐승을 인간의 생활양식에 최적화하려고 인간의 선의에 의지해 살아가는 아이 같은 존재로 길들여 왔다. 그래서인지 그러한 동물은 아이가 부모에게 보이는 것과 유사한 애착의 표현들을 동거하는 이에게 보이기 일쑤며, 인간도 대개는 자신의 아이를 돌보듯 동거하는 동물을 돌보고 자신의 아이에게 책임을 다하듯 동거하는 동물에게 책임을 다하려 애쓰는 경향을 보인다.⁷⁾ 간단히 말해 반려동물은 아이처럼 무력하고 의존적인 특성 때문에 인간에게 각별한 윤리적 책임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본

6) 싱어와 함께 동물 윤리를 개척한 선구자로 꼽히는 톰 리건은 인간 종 특유의 이성적 정체성을 결여 한 가장자리 인간들이 언어적·도덕적 행위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데도 각자가 의식 있는 ‘삶의 주체’로 인정되는 한에는 정상적 성인과 동등한 내재적 가치(inherent value)를 갖는 도덕적 수동자로 간주되듯, 그들과 비슷한 능력 수준의 동물들 역시 그러한 ‘삶의 주체’로서 그들과 동등한 내재적 가치를 갖는 도덕적 수동자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해서는 Tom Regan, *The Case for Animal Right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4, pp.152~153 참조.

7) 우석영은 “그것이 동물이든 유아이든 누군가를 들불 때 그리고 그 들본다는 느낌 그 자체의 들봄을 받을 때, 인간은 흄에 거하고 고향에 도착한다”(우석영, 『동물 미술관』, 궁리, 2018, 52쪽)고 말하는데, 이 말은 우리 주위의 다양한 반려동물과 어린아이 사이에서 흔히 감지되는 그러한 윤리적 유비를 적실히 표현해 주는 듯하다.

질상 취약하고 무력한 존재가 윤리적 책임의 본래적 대상이라는 한스 요나스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어린아이가 그렇듯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실현할 자립적 역량이 결여된 존재는 그러한 역량을 구비한 존재의 보호가 없이는 생존을 유지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그러한 점에서 ‘책임은 권력의 기능’이라는 그의 테제는 약하고 의존적인 존재의 곤경에 강하고 자립적인 존재가 배려적 관심을 기울이는 데 윤리적 책임의 요체가 있다는 뜻을 내포한다.⁸⁾ 그리고 반려동물은 인간의 책임성에 내맡겨진, 그러한 약하고 의존적인 존재의 한 본보기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반려동물의 실존적 무력함에 대한 고찰은 이제 우리에게 인간이 오랫동안 자랑으로 여겨 온 호모 사피엔스 종의 언어적·도덕적 ‘우월성’을 비판적으로 되돌아볼 여지를 제공한다. 인간이 사용하는 복잡하고 정교한 언어와 문자는 진실한 표현과 소통, 비판과 설득의 매개일 뿐 아니라 거짓된 선동과 아첨, 음해와 사기, 모욕과 인격 살인의 무기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우리의 인간관계는 미덕의 근원인 동시에 악덕의 온상이기도 한 것이다. 서펠의 말대로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진정한 감정과 의도를 숨기고 거짓으로 꾸밀 능력이 있는 유능한 배우다. 이 때문에 우리는 친구를 고를 때 극도로 조심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고 사기·조작·배신·거부를 비롯하여 모든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초래하는 위험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⁹⁾ 이렇게 본다면 인간의 언어적·도덕적 우월성이란 존재하는 소여가 아니라 추구되는 목표라 말해야옳을 것으로 생각된다. 단적으로 말해 그러한 우월성은 인간이 추구해 이뤄야 존재하게 될 규범적 이상인 것이다. 반면에 동물의 언어적·도덕적 무능함은 역설적으로 인간에 대한 동물의 애착이 어떠한 위선도 가식도 없는 고순도의 충심이라 믿을 근거가 되어 준다고 서펠은 말한다.

말 못하는 동물은 대화나 논쟁에 참여할 수 없지만, 바로 그 때문에

8) 이에 관해서는 Hans Jonas, *Das Prinzip Verantwortung: Versuch einer Ethik für die technologische Zivilisation*, Insel Verlag, 1979, pp.234~242 참조

9) James Serpell, 앞의 책, 200쪽.

사람을 판단하지도 비판하지도 속이지도 배신하지도 않는다. 동물은 말을 못하며 도덕적인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동물의 애정은 진실하고 순수하며 가식이 없는 것으로 느껴진다. 동물은 본질적으로 믿을 수 있는 존재인 것이다.

요컨대 개와 고양이는 집을 좋아하고 낮 시간에 활동하며 공격적이지 않고 길들일 수 있다는 따위의 이유만으로 인간에게 사랑받는 것이 아니다. [...] 두 동물이 발군의 성공을 거둔 이유는 바로 비언어적인 표현 능력에 있다. 그들은 주인 곁에 있으려 하고, 주인의 사랑을 갈구하며, 만남의 기쁨과 이별의 고통을 두드러지게 표현함으로써 그리고 애착과 송배의 표현을 통해 주인에게 어떤 결함과 실패가 있더라도 그를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사실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¹⁰⁾

그렇다면 인간의 손안에서 태곳적 야성을 상실한 이 동물들, 다시 말해 복종과 애착의 표현으로 인간의 마음을 사도록 진화된, 그러나 인간의 선의에도 악의에도 운명을 내맡긴 그들에 대해 인간이 이행해야 할 ‘획득의 무’는 지금까지 얘기한 그들의 무력함과 의존성을 고려해 거기에 상응하는 보호의 원칙을 확정할 때에야 비로소 대강의 윤곽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제일 먼저 부각되는 문제는 그들의 무력함과 의존성이 꼭 집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다. 인간의 손안에서 길러지는 동물들이 무력하고 의존적이라는 것은 일차적으로 그들이 그들을 입양한 사람과 그 가족의 손길에 의지하지 않고선 생존에 긴요한 물질적·심리적 자원들을 구할 길이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한마디로 그들은 인간의 부양 의지에 기대어 부양되는 처지인 것이다. 더욱이 인간의 부양 의지는 호르몬처럼 분비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으로 발휘되는 어떤 것이다. 롤랜즈는 이러한 ‘부양 의지를 발휘할 의무’를 동물 입양에 따르는 획득의무의 첫 번째 핵심 요소로 꼽으며 ‘동물의 기본적 욕구를 돌봄’이 그것의 요체라고 말한다.

10) 위의 책, 199~200쪽.

최소한 애완동물을 입양하는 행동은 그 동물의 기본적인 욕구를 돌볼 의무를 획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기본적인 욕구에는 육체적, 정신적 욕구가 모두 포함된다. 예컨대 개에게 먹이나 쉴 곳 따위는 개의 육체적인 욕구에 해당한다. 반면, 개 역시 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적 습성을 갖는 동물이 되었다. 따라서 다른 개와 함께하든, 인간과 함께하든, 어떠한 동반자 관계를 갖기를 원한다. 이는 개의 정신적 욕구에 해당한다. 애완동물을 입양할 때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첫 번째 조건은 이러한 ‘동물의 욕구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¹¹⁾

물론 이러한 의무의 이행은 말처럼 쉬울 리가 없다. 그것은 단순히 사료를 먹이고 대소변을 치워 주는 따위의 기계적 수발로 치환되지 않는다. 예컨대 강아지를 입양해 기르는 사람은 강아지가 성견이 되었다 노견으로 변하는 과정을 망연히 바라봐야 할 테고, 성가신 개털과 누릿한 개 냄새를 진득이 참아 내야 할 테며, 개와 함께 귀찮은 산책길도 꾸준히 다녀야 할 테지만, 이 모두는 변함없는 애정이 없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다. 산책만 보더라도 그렇다. 반려인은 보통 일에 지쳐 퇴근하면 조용한 휴식이 필요할 테지만, 그 순간 반려견은 빈집에서 외로이 감당했던 권태를 벌충할 활기찬 산책이 필요할 것이다. 롤랜즈가 말하듯 이 경우 “당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집에서 쉬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문제와 ‘산책을 나가는 것이 개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문제를 서로 비교해 보는 것이다.”¹²⁾ 이처럼 동물을 입양해 기름은 자신의 욕구와 동물의 욕구 중 무엇이 사소하고 무엇이 중대한지를 매일매일 정직히 판단하고 이 판단을 실행할 책임을 떠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반려’의 본래적 의미이다. ‘반려’는 구매해 쓰다가 놔두거나 버리는 완구가 아니라 가족처럼, 아이처럼 변함없는 애정으로 보살펴야 할 ‘책임’의 대상인 것이다.

이러한 고찰로부터 우리는 동물 입양에 따르는 획득의무의 두 번째 핵심 요소를 유추할 수 있는데, 그것은 ‘동물의 삶을 가능한 한 개선할 의무’

11) Mark Rowlands, 윤영삼 역, 『동물의 역습』, 306~307쪽.

12) 위의 책, 307~308쪽.

로 간단히 특징지어질 수 있다. 이러한 의무는 예컨대 입양된 개가 입양 전 다른 가정에 있었건 (특수 목적의) 보호소나 훈련소에 있었건 그때 먹던 것을 지금은 못 먹고 그때 하던 산책을 지금은 못 할 경우 반려인이 그 개를 책임 있게 보살피지 않고 있다고 판단할 근거가 되어 준다. 롤랜즈는 그러한 의무를 동물 입양의 규범적 조건에 관한 한 원칙, 즉 “애완동물이 됨으로써 그 동물의 원래 삶이 더 나빠져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 원칙으로 정식화한다. 이것은 “적어도 애완동물이 아니었을 때 향유할 삶보다, 애완동물로 사는 삶이 더 나빠져서는 안 된다”¹³⁾는 뜻을 내포한다. 쉽게 말해 ‘데려와 괴롭힐 거라면 입양하지 말라’는 취지의 이 원칙은 늑대를 입양해 기른 적이 있는 롤랜즈 자신의 체험¹⁴⁾에서 우러난 것인데, 전술한 『동물의 역습』에서 그는 늑대개처럼 야성을 보유한 동물들도 야생 상태로 돌아가야만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 뒤 여기에 다음과 같은 단서를 덧붙인다.

그러나 [나는] 늑대개가 인간의 집에서 누리는 삶이 적어도, 야생상태에서 누리는 삶 못지않게 좋은 경우에만 늑대개를 키우는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한다. 물론, 이런 조건을 거의 충족하기는 어렵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늑대개가 자연적인 습성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늑대개는 불행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사냥을 해야 하고, 이리저리 숲 속을 거닐어야 한다. 자연서식지에 사는 늑대는 밤에 사냥을 하면서 80킬로미터나 면 거리까지 여행을 한다. 따라서 만약 늑대개를 입양하려 한다면, 개가 뛰놀고 사냥할 수 있는 조건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 분명히 그런 사냥과 방랑의 습성은, 그 동물들이 하려고 해서 하는 행동이 아닌 타고난, 어쩔

13) 위의 책, 308쪽.

14) 이 체험을 상세히 기록한 ‘철학자와 늑대(The Philosopher and the Wolf: Lessons from the Wild on Love, Death, and Happiness)’란 제목의 책은 2012년에 최초로 한국에 번역·소개되었는데, 이것은 롤랜즈가 인간에게 포획된 반(半)야생의 늑대 브레닌을 집으로 데려와 기르다 11년 후 사별할 때까지 겪은 감정과 생각의 변화들을 성찰적으로 술회한 자전적 에세이다. Mark Rowlands, 강수희 역, 『철학자와 늑대』, 추수밭, 2012 참조.

수 없는 특성이다. 때문에 당신은 산악 자전거를 잘 타든가, 산악구보능력이 뛰어나다든가, 늑대개와 보조를 맞출 수 있을 만큼 체력이 튼튼해야 할 것이다. 그 밖에도 다른 개나 동물, 인간들을 먹이로 알고 공격하지 않도록 충분히 훈련시켜야 하는 문제도 있다.¹⁵⁾

이러한 고찰은 (롤랜즈 자신의 경우처럼) 대단히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늑대나 늑대개 같은 야생 또는 준(準)야생 동물의 입양이 윤리적으로 정당화되기는 어려울 것임을 암시한다. 그러한 야성 보유 동물은 대부분 성공 여부도 불투명한 장기적·집중적 ‘인간화 훈련’이 필요할 뿐 아니라 야생 상태에서 누릴 수 있는 욕구 충족 수준을 인간과의 동거로 누리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요한 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그러한 동물을 입양해 기를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순전한 ‘윤리적 오산’에 다름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오산은 대개의 경우 늑대나 늑대개의 장엄한 야성을 마땅 한편의 좁다란 철옥(鐵獄)에 가두고 개줄로 동여매는 식의 실질적 동물 학대로 귀결되며 마련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장에서 언급한, 동물 입양에 따르는 획득의무의 두 가지 핵심 요소를 반려동물의 모든 사례에 적용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동물을 입양한 사람은 첫째로 그 동물의 기본적 욕구를 돌보려는 부양 의지를 발휘하고 있는지를, 둘째로 그 동물의 삶이 입양 전보다 낫도록, 아니면 최소한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여하고 있는지를 자문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획득의무의 그 두 요소에 따르자면 한 사람의 가정에 입양된 동물은 입양 전 다른 사람의 가정에 있었건 벼려져 길바닥을 떠돌았건 유기 동물 보호소에 있었건 특수견 훈련소에 있었건 간에 입양한 가족의 보호 아래 먹이와 쉴 곳, 애정과 친교에 대한 기본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하며, 가능한 한 입양 전 상황이 제공한 것 보다 더 나은 충족 수준을 누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럴 수 없는 한 입양은 (처음부터 의도한 것은 아닐지라도) 마침내 사실상의 학대로 귀

15) Mark Rowlands, 윤영삼 역, 『동물의 역습』, 309~310쪽.

결될 경솔한 선택임이 판명될 것이다. 그렇다면 안내견의 경우는 어떨까? 시각 장애인 가정에 입양된 안내견은 획득의무의 두 측면에 저촉됨이 없는, 따라서 윤리적으로 무결한 동물 사용 사례로 간주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 마리의 강아지가 안내견으로 길러져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표준적 과정을 일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III. 안내견의 생애와 역할 개요: 출생에서 은퇴까지

일반적으로 안내견은 안내견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한국의 경우에는 안내견 자질이 탁월한 특정 견종, 대개는 래브라도 리트리버 종의 강아지가 ‘퍼피 워킹’¹⁶⁾을 비롯한 일련의 훈련 및 시험 과정을 거치며 최종 단계에서 합격 판정을 받아야 비로소 공식적 안내견 자격을 획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단계에 못 이른 개들은 엄밀히 말하면 ‘예비 안내견’ 또는 ‘안내견 후보’인 셈이며, 한국 유일의 공인 안내견 양성소인 삼성화재안내견학교는 그들 중 연 10~12마리 정도를 엄선해 장애인 가정에 기증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한 엄선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며, 엄선된 개들은 장애인의 반려로서 어떤 삶을 살아갈까? 한 마리의 개가 사람의 손안에서 태어나 사람의 의도대로 길러지고 부려지는 이 과정에 민감한 윤리적 문제는 없는가? 지금부터 필자는 안내견이 출생하며 겪게 되는 삶의 면면을 은퇴 후의 여생까지 개관하며 그 질문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한다.¹⁷⁾

안내견의 생애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경험은 당연히 출생이다. 안내견

16) ‘퍼피 워킹’이란 사회에서 공인된 안내견 양성 기관이 생후 7주 이상 된 예비 안내견을 자원봉사자 가정에 위탁해 약 1년간 사회화 훈련을 받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삼성화재가 1993년부터 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경기도 용인시에 안내견 학교를 설립해 운영 중인데, 현재까지는 한국 유일의 보건복지부 인증 안내견 양성 기관인 이곳이 안내견을 육성해 필요한 이들, 즉 시각 장애인들에게 기증하는 사업을 전담해 온 상황이다. 안내견 사업의 세목과 내용에 관해서는 ‘삼성화재안내견학교’ 홈페이지(<https://mydog.samsung.com>) 참조.

17) 아래에서 간추린 안내견의 생활사는 하우종, 『나는 안내견 공부 중입니다』, 알에이치코리아, 2012, 122~125쪽; 홍하일, 「맹인 안내견에 대해서」, 『대한수의사회지』 제32권 제4호, 대한수의사회, 1996, 258~263쪽에 상술되어 있다.

학교¹⁸⁾는 통상 건강하고 혈통 좋은 암수 종견(種犬)을 생식시켜 한 해에 한 번씩 한배의 예비 안내견 강아지들이 세상 빛을 보게 한다. 또한 이들은 출생 후 7주가 지나면 낯선 환경과 다양한 상황에 적응하고 사람과 교제하는 사회성을 기르도록 1년간 일반인 가정에 맡겨져 양육되는 ‘퍼피 워킹’을 경험하게 된다. 이 기간에 안내견 학교는 강아지를 맡아서 기르는 무보수 자원봉사자, 즉 ‘퍼피 워커(puppy walker)’에게 기본적 사육용품과 의료비를 지원하며 훈련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위탁 가정을 방문해 강아지의 사회화 수준과 건강 상태 등을 꼼꼼히 점검하게 한다. 강아지가 ‘앉아!’, ‘일어나!', ‘기다려!', ‘안 돼!'와 같은 기본적 명령어에 복종으로 반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도 퍼피 워커와 생활을 함께하는 이 시기에 이뤄지는 일이다.

퍼피 워킹이 끝난 강아지는 안내견 학교로 돌아가 안내견 적합성을시험하는 기본적 종합 평가를 받으며, 여기에 합격하면 그제야 6~8개월의 본격적·체계적 양성 훈련에 맡겨져 학교는 물론 학교 밖 도로와 상가, 버스와 지하철 같은 장래의 ‘일터’에서 다양한 환경 및 상황과 맞닥뜨려 보는 고강도의 ‘현장 실습’ 체험을 쌓게 된다. 이 시기에 안내견 학교는 정한대로 먹고 정한 곳에 배설하는 식사 및 배변 훈련을 비롯해 다양한 곳에서의 보행 훈련, 다양한 교통수단 승하차 훈련, 명한 대로 행동하는 복종 훈련, 위험한 명령을 거슬러 보행 안전을 확보하는 지적 불복종 훈련 등 다양한 고난도 관문들을 준비해 놓고 개들을 시험해 최종 합격 여부를 판정한다. 여기서 합격한 개들은 공식적 안내견 자격으로 일정한 절차를밟아 임무에 투입되지만, 불합격한 개들은 입양을 희망하는 일반인 가정에 일반 반려견으로 분양된다.

합격한 개들은 임무에 투입되기 전 그들에게 어울리는 수요자를 배정받는 ‘매칭(matching)’이란 절차에 들어가는데, 이 또한 쉬운 일은 아니다. 앞 못 보는 수요자의 성격과 직업, 보속과 보폭, 건강 상태와 생활환경 등을 고려해 성향상 최적이라 생각되는 안내견을 붙여 줘야 안내견도 공들

18) 별다른 언급이 없는 한 이하에서 ‘안내견 학교’란 한국의 사례인 ‘삼성화재안내견학교’를 말한다.

여 연마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짹을 정한 수요자는 짹이 된 개와 함께 4주간 ‘사용자 교육’으로 불리는 합숙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 가운데 2주는 안내견 학교 내 숙소에서 개와 함께 지내며 안내견 관리법을 숙달하는 기초 교육 기간이고, 나머지 2주는 수요자의 일상적 주거지와 보행로를 개와 함께 오가며 숙달하는 현장 교육 기간이다. 두 기간을 거치며 안내견과 수요자는 서로 간에 살갑고 친밀한 애정과 신뢰의 유대를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함께하는 4주가 지나면 드디어 본격적 동거와 안내견 활동이 시작된다. 그러나 이후로도 안내견 학교는 훈련사로 하여금 1년에 두 번씩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안내견의 역할 수행과 건강 상태에 이상은 없는지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후 관리를 계속해 나간다. 그 밖에도 평상시 언제든 점검할 문제가 생기면 그때마다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비정기적 수시 관리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안내견은 10살쯤에 이르러 혼역에서 은퇴할 시기를 맞는다. 은퇴한 고령견은 ‘은퇴견 홈 케어’ 활동을 지원해 선정된 봉사자 가정에 입양되거나 안내견 학교로 돌아와 편안한 여생을 보내게 된다. 은퇴견을 떠나보낸 사용자도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또 다른 안내견을 분양받는다.

이렇게 앞 못 보는 사람의 ‘눈’으로 길러지고 복무하는 안내견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이동권을 비롯한 인간적 제 권리의 원활히 누리도록 도와주는 보조역을 수행하며, 이로써 그들이 더 많은 자유와 더 많은 기회에 다가갈 용기를 갖도록 고무하는 심리적 견인력을 발휘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아가 많은 경우 안내견은 때때로 장애인을 엄습하는 심리적 좌절 요인, 즉 사회적 무력감과 고독감을 치유하는 심신의 반려자 역할을 수행해 줄 것으로도 기대된다. 그리고 안내견의 이러한 효능들은 이미 안내견과 동거한 적 있는 수많은 장애인들이 다양한 체험담을 통해 충분히 증언해 왔다고 생각된다. 일례로 한국의 삼성화재안내견학교 홈페이지에 마련된 ‘안내견이야기’ 메뉴에는 장애인과 안내견의 두터운 상호 신뢰와 애정 어린 반려 관계를 응변으로 보여 주는 다양한 체험담이 소개되어 있다.¹⁹⁾

전 세계에 잘 알려진 사례로는 루이스 카를로스 몬탈반이 ‘기적의 투즈데이(Until Tuesday)’란 제목의 저서에서 소개한 그의 도우미견 ‘튜즈데이’ 이야기를 들 수 있다.²⁰⁾ 미국의 퇴역 상이군인인 몬탈반은 이라크전에서 큰 부상을 입은 후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까지 얻었고 그 여파로 자기 삶이 파멸의 구렁에 빠져 가는 모양을 한동안 망연히 바라봐야 했지만, 도우미견 투즈데이를 만나고부터 그의 삶에 생긴 긍정적 변화의 징후들을 감지하기 시작했다고 그 책에서 고백한다.²¹⁾ 이러한 그의 회고적 술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장애인에게 “도우미견은 정신적 경호원들이다. 존재만으로 안전하고 안락하게 만들어주니 말이다. 특히 처음 만나 짹을 이루기 시작할 때면 도우미견은 새로운 삶을 약속해주는 상징이 된다. 그저 의심과 불안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신념과 확신을 주기 때문이다.”²²⁾ 더욱이 하고많은 그런 개 중 하나가 아니라 바로 ‘그의’ 개가 된 투즈데이는 그에게 세상의 위험을 막아 주는 ‘척후병’이요, 세상의 모욕을 걸러 주는 ‘완충기’요, 세상으로 통하는 덜 험한 ‘우회로’라 말해지며²³⁾, 급기야는 그의 삶의 ‘지팡이’요 ‘저울’이요 ‘시계’요 ‘감독’이요 ‘통제자’요 ‘동반자’요 ‘친구’요 ‘지지자’요 ‘희망’이라 선언된다.²⁴⁾

그렇다면 이 경우 장애인은 자기 개의 그러한 헌신을 고맙게만 여기면 그만일까? 아무래도 필자는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기가 어려운 느낌이다. 엄밀히 말하면 그러한 헌신은 두 ‘반려’ 상호 간의 신뢰를 매개로 ‘교환’될 때에만 윤리적 승인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장애인은 안내견과의 관계에서 그 자신도 안내견에게 고마운 존재임을 증명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안내견 사용의 윤리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

19) 이에 관해서는 해당 웹 페이지(<https://mydog.samsung.com>) 참조.

20) 이에 관해서는 Luis Carlos Montalván / Bret Witter, 조영학 역, 『기적의 투즈데이』, 쎔앤파커스, 2013 참조.

21) 물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몬탈반은 시각 장애인이 아니라 지체 장애인이고, 또 다른 주인공인 투즈데이도 시각 장애인 안내견이 아니라 지체 장애인 도우미견이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그를 돋는 일에 최적화된 기능성 반려견의 살갑고 친밀한 유대 관계는 장애의 종류에 구애되는 것이 아님을 감안할 때 그러한 차이는 사소한 것이라 말해도 좋을 것이다.

22) Luis Carlos Montalván / Bret Witter, 앞의 책, 162쪽.

23) 이에 관해서는 위의 책, 215쪽 참조.

24) 이에 관해서는 위의 책, 340쪽 참조.

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물어야 한다. 안내견과 동거하는 장애인은 안내견이 자기에게 그렇듯 안내견에게 고마운 존재일 수 있는가? 이것은 동물 심리에 관한 과학적 물음이 아니라 동물의 헌신에 갚하는 인간 측의 반대급부가 있는지를 따지는 윤리적 물음이다.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부정적인 경우 장애인과 안내견의 관계는 일방적 ‘착취 관계’일 것이고, 긍정적인 경우는 상호적 ‘반려 관계’일 것이다. 다행히도 몬탈반은 그 물음이 환기하는 윤리적 균형감을 진솔히 드러내며 “튜즈데이는 기계가 아니라 개”임을 강조한 뒤 그 때문에 그 개는 “친절과 헌신, 사랑 따위를 나한테 줄 수도 있고 거둘 수도 있었다”는, 나아가 “그의 사랑을 원한다면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야 한다”²⁵⁾는 자성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준다.

그럼에도 이 장에서 개관한 안내견의 생애는 출생에서 은퇴까지 인간의 손으로 세밀히 통제되는 조직적·체계적 훈육들의 연속이며, 거기에는 개들의 본성을 거스르는 강제적 주거 변경과 조건 반사적 ‘행동 교정’ 훈련들이 중요한 요소로 포함되어 있는 게 현실이다. 전술한 것처럼 안내견은 태어난 지 7주 만에 부모 개와 떨어져 처음 보는 폐피 위키 가정에 1년간 위탁되며, 이 시기가 지나면 또 다시 안내견 학교의 훈련사와 봉사자, 반려가 된 장애인, 은퇴견 홈 케어 자원자 등 수많은 사람들의 수중에 차례로 맡겨지기 때문에 평생 동안 한 가족과 깊고도 긴밀한 애착 관계를 형성할 기회는 누려 볼 수 없는 운명이다. 더욱이 안내견은 예비 안내견 때부터 앞으로 수행할 역할에 한 치도 어긋남이 없도록 동행인의 명령대로 앉고 서고 엎드리고 기다리는 법을 ‘숙달할 때까지’ 배우는데, 이러한 명령들은 모두가 식사, 배뇨, 배변, 보행, 이동 등 개들이 본능대로 수행하는 일상사에 금단의 규칙과 절도를 부여하는 인위적 개입들이다. 이에 따라 안내견은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서 먹고 놀고 배설해야 하며, 나머지 시간에는 그리고 싶어도 참도록 반복적으로 훈련된다. 못 침는 건 교정해야 할 실수로 간주된다.

이렇게 안내견은 지정된 경로로 장애인을 안전히 이끄는 임무에 집중

25) 위의 책, 152쪽.

해야 하므로 보행 시 경로 이탈을 유발하는 개들의 자연적 식욕, 변의(便意), 호기심 등은 임무상 ‘집중 장애’ 요인으로 치부되어 억압된다. 심지어 사람들이 좋아하는 개 특유의 사교성도 훈련 및 임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 한 사람에 대한 충성심으로 집중화하게끔 유도되므로 안내견은 공공장소에서 뭇사람이 보이는 관심과 애정에 현혹되지 않도록 시선과 행동을 ‘배운 대로’ 조절하며, 사람들도 안내견을 소리쳐 부르거나 곁에 와 쓰다듬지 않는 것이 장애인에 대한 ‘예절’임을 반복되는 경험으로 배우게 된다. 간단히 말해 안내견은 반려인 외에는 누구와도 관심과 애정을 주고받지 않도록, 말하자면 타고난 사회성을 발휘하지 않도록 훈육되는 사회성 동물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인간의 안내견 사용이 윤리적으로 정당한지에 대해 직접 묻고 답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 이 장에서 본 것처럼 안내견은 제 본능을 억제하고 인간에게 봉사하고 헌신할 운명인 ‘특수 임무 반려동물’이다. 그리고 이 운명은 인간이 인간을 이롭게 하려고 개에게 부여한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안내견은 서커스 동물처럼 인간에게 착취되는, 그러나 ‘부드럽게’ 착취되는 예속적 동물의 또 한 예에 불과한가? 아니면 (안내견의) 봉사에 상응하는 (반려인의) 존중을 매개로 도덕적 배려의 대상권(對象圈)에 편입되는, 이종(異種) 간 협력과 공생의 정당한 범례인가? 필자는 여태껏 학적으로 공론된 바 없었던 이 물음에 하나의 시론적 대답을 내놓는 것으로 본론의 종결부를 갈무리 해 보려고 한다.

IV. 인간의 안내견 사용은 윤리적으로 정당한가?

앞 장에서 드러난 것처럼 안내견 사용의 윤리적 정당성을 의심케 하는 단 하나의 결정적 요인은 개들이 훈련 및 임무 수행 과정에서 무시로 당하는 ‘본능의 억압’이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본능의 억압’이란 개에게 무엇일까? 그것은 개에게 얼마큼의 고통으로 지각되는 것일까? 앞에서 언급한

롤랜즈의 늑대 브레닌은 다행히도 선량한 주인 덕에 자신의 본능이 억압되는 경험을 자주 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롤랜즈의 회상에 따르면 “나는 브레닌에게 꼭 필요한 것만을 가르쳤다. 재주를 가르칠 필요는 전혀 못 느꼈다. 자기가 바닥에 뒹굴고 싶지 않은데 내가 왜 그것을 시켜야 하는가? 심지어 브레닌에게 바닥에 앉으라고 시킬 필요도 느끼지 못했다. 앉건 서건 그것은 브레닌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다.”²⁶⁾ 브레닌이 부여 받은 이 자유는 아마도 갯과 동물의 존재론적 특성에 대한 롤랜즈의 심오한 이해에 기인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롤랜즈는 자신이 한집에서 다 같이 기르던 늑대와 개와 늑대개 등의 갯과 동물들이 본성상 ‘시간의 피조물’인 인간과 다르게 ‘순간의 피조물’이란 사실을 누구보다 더 깊이 있게 통찰한 철학자이다. 그는 현 순간의 본능이 억압될 때 개들이 사람보다 훨씬 더한 고통을 느끼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보았다.²⁷⁾

롤랜즈의 이러한 통찰은 개들이 매일매일 똑같은 사료를 먹어도 지겨운 줄 모르고, 똑같은 산책로를 걸어도 늘 신나고, 똑같은 공놀이를 하재도 열정이 그대로인 이유를 설명해 준다. 단적으로 말해 시간의 피조물인 인간은 (과거에 대한) 기억과 (미래에 대한) 기대로 오염된 현재를 살지만, 순간의 피조물인 개들은 오롯이 현재인 현재를 산다는 게 그 이유다. 한마디로 개들은 순간을 산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간은 겪어 낸 과거와 겪게 될 미래를 의식해 끝없이 후회하고 주저하고 기대하고 인내하며 현재를 비현재(非現在)와 연접하나, 개들은 매 순간 온 힘으로 현재의 만족을 추구하고 만족이 유예되면 그에 대해 속절없는 괴로움을 드러낸다. 롤랜즈는 개들의 그러한 본능적 ‘카르페디엠(Carpe diem!)’을 근거로 그들을 의인화해 니체적 “영원회귀의 열정적인 수호자”²⁸⁾로 수식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이것은 개가 사람보다, 또는 사람이 개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이 아니라 양자의 존재론적 특성이 ‘다르다’는 사실을 서술한 것이며, 이로써 본능적 식욕이나 호기심을 ‘안 돼!’나 ‘앉아!’나 ‘기다려!’ 따위의 명령어로 억제하는

26) Mark Rowlands, 강수희 역, 『철학자와 늑대』, 58쪽.

27) 이에 관해서는 위의 책, 280~293쪽 참조.

28) 위의 책, 292쪽.

훈육법이 사람보다 개에게 훨씬 더 고통스런 개입임을 말하고자 한 것이다. 롤렌즈는 전술한 3마리의 반려에게 뺑을 먹이던 순간을 묘사하며 그 점을 인상적으로 보여 준다.

내가 매일 아침마다 팽오쇼콜라를 3등분할 때 녀석들의 표정을 보았어야 한다. 기대감에 온몸을 떨고, 침이 강물처럼 쌩솟고, 고통스러우리 만큼 온 힘을 다해 집중하고 있는 모습 말이다. 그것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오직 팽오쇼콜라만 먹는다고 해도 행복할 표정이었다. 그들의 턱관절이 팽오쇼콜라를 씹고 있을 때는 그 순간 자체로 완벽한 것이다. 시간 속에 끼쳐 있는 다른 어떤 순간들과도 섞이지 않은, 그런 순간이었다. 그 순간 전후에 일어날 일들이 더 추가되거나 덜어지지도 않은 완전한 순간이었다.

인간에게 순간만으로 완전한 그런 순간이란 없다. 인간의 모든 순간들은 불순물이 첨가되어 있다. 과거에 대한 기억과 미래에 대한 기대로 순간들은 혼탁해져 있다. 우리 삶의 매 순간마다 시간의 화살은 우리를 창백하게 하고 죽게 한다. 그런데 인간은 이런 우리가 다른 동물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믿는 것이다.²⁹⁾

호기심의 경우도 이와 같다. 집을 나와 길에 나선 개들의 호기심은 반려인이 의도했던 느긋한 ‘산책’을 활동적인 ‘스포츠’로 바꿔 놓기 일쑤다. 반려견을 길러 본 사람은 산책 나간 자기 개의 야단스런 땀박질과 종종걸음을, 요란한 꼬리질과 설레발을, 눈·코·입·귀의 열정적인 과로를 기억 할 것이다. 한마디로 길 위의 개들은 점잖지 않으며, 점잖을 수 없다. 그들은 어떠한 ‘나중’도 모르며, 오로지 ‘지금’과 ‘여기’의 신명을 극대화하느라 잡시도 가만있질 못한다. 길 위와 길섶의 매혹물들, 다시 말해 흙과 먼지, 돌멩이와 마른 똥, 별과 개미, 참새와 까치, 개울과 안개, 바람과 눈비, 논밭과 수풀 등 온갖 것이 그들의 눈·코·입·귀를 잡아끌기 때문이다. 그들은

29) 위의 책, 283쪽.

그것들을 지나치지 않으며, 그것들의 매혹은 또 다른 시공간에 저축되지 않고 바로 ‘지금’ 그리고 ‘여기’서 소진된다. 한마디로 그들은 매 순간을 영원처럼 향유하고 싶어한다. 소설가 김훈은 한국의 평범한 시골 개가 주인공인 동물 시점 소설 『개』에서 주인공 개 ‘보리’의 독백을 통해 들에 나온 개들이 세상에 보내는 그 환대의 몸짓과 날것의 호기심을 다음과 같이 생동감 있게 묘사한다.

개의 공부는 매우 복잡해. 개는 우선 세상의 온갖 구석구석을 몸뚱이로 부딪치고 뒹굴면서 그 느낌을 자기의 것으로 삼아야 해. 그리고 눈, 코, 귀, 입, 혀, 수염, 발바닥, 주둥이, 꼬리, 머리통을 철새없이 굴리고 돌려가면서 냄새 맡고 보고 듣고 노리고 물고 뜯고 씹고 핥고 뺏고 헤치고 덮치고 쑤시고 뒹굴고 구르고 달리고 쫓고 쫓기고 엎어지고 일어나면서 이 세상을 몸으로 받아내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지.³⁰⁾

이러한 개의 삶의 ‘이념형’은 단순한 문학적 허구로만 보이지는 않는다. 우리가 집에서, 길에서, 들에서 목격하는 현실의 개들도 먹는 순간, 노는 순간을 그 자체로 완전하게 만들려는 현재 몰입 본능을 흔하게 드러내기 때문이다. 개들이 이 본능을 배운 적이 없다면 잊을 수도 없는 것이 자명한 이치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들이 본능대로 못 먹고 못 놀면 비컨대 생각할 권리를 빼앗긴 사람처럼 커다란 좌절과 실망을 경험할 거라고 추정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안내견은 어떨까? 전술한 필자의 퍼피 워킹 시기에 필자의 가족과 동거한 래브라도 리트리버 종 강아지 ‘노벨’은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서 먹고 노는 복종 행동 패턴을 반복되는 연습으로 익혀야 했다. 이러한 연습은 대체로 강아지를 몇 개의 정형적 언어 자극, 즉 ‘안 돼!', ‘앉아!', ‘일어나!', ‘기다려!' 따위의 기본적 명령어에 순차하는 단순 반복 훈련으로 이루어진다. 안내견 학교는 위탁일에 실시하는 사전 교육에서 단호한 표정과 어투로 명령하는 법, 유인용 사료를 손에 쥐고 먹이는

30) 김훈, 『개: 내 가난한 발바닥의 기록』, 푸른숲, 2005, 24~25쪽.

법, 실수와 미숙에 대응하는 법 등을 퍼피 위커에게 가르친다. 이러한 훈련법은 아무래도 명령을 자극으로, 사료를 유인으로 해 의도한 반응, 즉 복종을 끌어내는 행동주의 동물관의 응용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더욱이 그것은 개에게 적잖이 힘들고 괴로울 것 같은 내면화를 강요한다. 필자는 하루 두 번 식사 때 롤랜즈의 늑대처럼 기대감에 내밀리던 노벨의 작은 몸과 ‘기다려!’란 명령에 뻣딛고 부들대던 앞발의 팽팽한 긴장을 기억한다. ‘먹어!’란 명령에 밥그릇이 비워지는 시간은 10초도 안 되지만, 이러한 경이적 계결은 노벨의 본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에 기인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노벨은 장래에 수행할 임무에 대비해 먹고 싶을 때 먹는 게 아니라 허락받았을 때 먹는 식사 패턴에 익숙해져야 했던 것이다. 산책도 비슷했다. 필자는 개답게 쿵쿵대고 한눈팔며 나부대던 노벨을 위압해 똑바로 앞만 보고 겉도록 길들이던 길 위의 시간들도 기억한다. 그러한 시간들은 노벨이 처음에 지녔던 자연적 활력을 훈련된 인내로 서서히 바꿔 갔고, 그 덕에 노벨은 1년 만에 훌쩍 커진 몸집처럼 ‘커다란 인내’로 자라나 안내견 학교로 돌아갔다. 그처럼 일상적인 본능의 억압은 안내견 학교의 관리 아래 계속될 것이었다.

그러나 6개월 후 안내견 학교는 노벨이 분격적 훈련의 관문들을 못 넘고 불합격 처리된 사실을 필자에게 알려 왔다. 불합격 사유는 불행히도 혹은 다행히도 노벨이 임무상 집중 장애 요인인 본능적 호기심을 끝내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노벨은 여전히 ‘유혹에 약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노벨은 더 이상 ‘예비 안내견’ 딱지를 달고 있지 않아도 되었고, 얼마 안 가 불합격견 ‘일반 분양’ 프로그램에 지원해 엄격한 자격 심사를 통과한 또 한 가정에 ‘일반 반려견’으로 입양되었다. 그러나 필자는 노벨이 목표를 못 이뤄 불행해졌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안내견’이라는 목표는 애초부터 노벨의 목표가 아니라 인간의 목표였고, 설사 이 목표를 이뤘더라도 노벨은 안내견으로서의 일상적 능력 발휘를 위해 타고난 개의 본능을 계속 억제해야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안내견 사용이 윤리적으로 부당한 일임을 합의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개들의 본능을 억압하지 않기 위해 그들의 일부를 안내견으로 기르고 부

리던 종래의 관행을 폐지해야 하는가?

필자는 오랫동안 즉답을 미뤄 온 이 질문에 궁정 혹은 부정의 확답을 내리는 대신에 부정의 대답, 즉 안내견 사용의 정당성 주장이 윤리적 승인을 얻기 위해 만족시켜야 할 최소한의 조건을 적시하는 것이 그 문제에 대한 최선의 대응이라고 믿는다. 왜냐하면 안내견은 적어도 인간의 사소한 이익을 위해 무참히 학대받고 도륙되는 여타의 동물들³¹⁾과 다르게 윤리적으로 중차대한 역할, 즉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런 경우 우리는 인간의 기본권과 동물의 복지 중 그 무엇도 무시하지 않으면서 가능한 한 그 둘의 양립을 매개할 규범적 조건들을 모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필자는 장애인의 기본권과 안내견의 복지가 상충하는 관계가 아니라 일정한 조건 아래 양립할 수 있는 관계임을 증명하는 일이 문제 해결의 관건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술한 안내견의 수난, 즉 ‘본능의 억압’은 어떠한 조건 아래 ‘착취’의 징후가 아니라 ‘반려’의 징후라고 생각될 수 있을까? 필자는 안내견의 수난을 윤리적 허용치 이하로 제한하게 될 그 조건을 아래에서 두 가지로 대별해 간략히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 조건은 현신의 상호성에 관한 명제, 즉 ‘인간은 안내견의 현신을 전술한 획득의무의 이행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명제로 표현될 수 있다. 이 조건은 안내견의 전 생애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안내견 학교의 훈련사와 봉사자, 퍼피 워커, 반려가 된 장애인, 은퇴견 홈 케어 봉사자 등 (예비) 안내견과 잠깐이든 오래든 동거할 기회를 갖게 된 사람은 누구나 그 의무를 소홀히 여기거나 방기하면 안 된다. 다시 말해 장애인을 비롯한 그 개의 다양한 반려인과 수탁인은 먹이와 쉴 곳, 애정과 친교에 대한 그 개

31) 제임스 레이첼즈의 적나라한 지적대로 오늘날 “우리는 동물을 키워서 음식으로 먹는다. 우리는 동물을 의학 실험뿐 아니라 심리 실험을 위해 연구실에서 사용하며 비누와 화장품과 같은 제품의 안전성을 실험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우리는 동물을 교육적 목적으로 교실에서 해부한다. 우리는 동물의 가죽을 의복, 깔개 그리고 벽을 장식하기 위해 사용한다. 우리는 동물을 동물원, 서커스, 그리고 로데오에서 즐거움을 느끼기 위한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 [...] 또한 우리는 동물을 제미삼아 죽이는 대중 스포츠를 즐기기도 한다.”(James Rachels, 김성한 역, 『동물에서 유래된 인간·다윈주의의 도덕적 함의』, 나남, 2009, 328쪽)

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해 주는 한편, 자기에게 전네진 그 개의 삶이 전 단계의 삶보다 가능한 한 나아지게 하려는 쉼 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요구는 앞 장에서 필자가 안내견의 헌신에 대한 ‘윤리적 균형추’로 꺼내 든 생각을 다시금 환기해 강조하는 것이다. 거기서 필자는 장애인과 안내견이 서로 간의 신뢰를 매개로 헌신을 교환할 때 비로소 안내견 사용의 윤리적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조건이 만족되면 양자는 ‘반려 관계’요, 만족되지 않으면 ‘착취 관계’라고 했던 요점도 여기서 다시금 환기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조건은 훈육의 질에 관한 문제, 즉 ‘안내견의 훈육에 물리적 강압이 사용돼선 안 된다’는 문제로 표현될 수 있다. 전술한 것처럼 안내견의 훈육에는 개들의 본능을 억압하는 일련의 ‘행동 교정’ 조치들이 수반되나, 이러한 본능의 억압이 곧바로 ‘학대’의 증거라 생각되진 않는다. 그것들은 대개는 인간이 개와 함께 시작한 생물학적 이종 동거의 특수하고 불가피한 유후생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인간인 우리도 살아가는 평생 동안 식욕과 변의를 비롯한 본능적 욕구들을 참아야 할 무수한 상황들을 맞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고통은 정신적·육체적 피학감과 무관한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타인에게 누릴 것을 염려해 마땅한 법‘때’와 변‘소’를 기다리는 절제를 사람이 지녀야 할 당연한 미덕으로 여기는 게 사실이다. 필자는 이것을 습성화된 시민 의식의 소치로 이해하며, 안내견의 경우도 인간과의 공생에 긴요한 일련의 ‘준법 행동’을 습성화하지 않으면 인간의 반려로 살기란 어려움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를 위한 훈련에 물리적 강압이 사용되면 이때부터 인간화의 필수적 매개이던 본능의 억압은 단순한 폭군적 지배의 방편으로 변질될 것이다. 한마디로 그것은 ‘학대’가 돼 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레이먼드 게이티가 반려견의 훈련을 ‘시민 교육’에 비유했던 동기와도 대체로 부합한다. 그는 2002년에 출간된 ‘철학자의 개(The Philosopher's Dog)’란 제목의 저서에서 개들을 존중하는 사람에게 훈련의 목적은 개들을 자기가 명한 대로 움직이는, 그래서 정확히 예측되는 로봇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와 신뢰를 주고받을 의사소통 파트너로 만드

는 것이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그는 이른바 ‘조련사 관점’, 즉 일련의 정형화된 언어적·행동적 자극을 반복해 그것과 조응하는 복종적 행동 반응을 끌어내는 행동주의 훈련법에 대해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한다.³²⁾ 당연히도 이 입장은 필자의 테제처럼 개에 대한 물리적 강압의 사용에 반대하는 것이지만, 필자는 특정한 복종적 행태들이 안내견의 임무 수행과 ‘시민 교육’에 절묘한 것임을 감안하면 행동주의 훈련법의 전적인 배제는 비현실적 처방일 수 있다는 의심을 떨치기 어렵다. 그러므로 장애인을 비롯한 안내견의 다양한 반려인과 수탁인은 그러한 훈련법을 (장애인의 관점에서) 필요한 한 구사하되 개에게 강압과 체벌의 기억이 복종의 동인으로 작용할 상황은 발생하지 않도록 반려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³³⁾ 그러지 않으면 그들의 반려 역(役)은 언제든 학대로 표변할 것이니 말이다.

V. 나오는 말

지금까지 필자는 최근 들어 활발해진 동물 윤리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반려동물의 특수 사례인 안내견이 인간의 손안에서 다뤄지는 방식에 윤리적 부당함은 없는지의 여부를 밝히려고 시도했다. 맨 먼저 필자는 인간이 동물을 반려로 맞을 때 떠안는 ‘획득의무’의 두 가지 핵심을 지적했다. 그 중 하나는 ‘동물의 기본적 욕구를 돌볼 의무’였고, 다른 하나는 ‘동물의 삶을 가능한 한 개선할 의무’였다. 그렇다면 안내견은 이러한 의무들을 준수한 동물 사용 사례로 간주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려고 필자는 안내

32) 이에 관해서는 Raimond Gaita, 변진경 역, 『철학자의 개 — 곁에 있는 동물들과 함께 철학하기』, 돌베개, 2018, 243쪽 참조.

33) 인간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동물들의 훈련과 관련해 필자의 이러한 입장은 말하자면 행동주의 폐기가 아니라 윤리적 여파, 즉 그것의 연성화와 비폭력화를 응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행동주의 훈련법의 의의에 관한 게이터와 필자의 이러한 입장 차이는 엄밀히 말해 ‘일반 반려견’의 경우와 ‘안내견’의 경우를 구별하면 간단히 해소될 문제로도 보인다. 다시 말해 안내견은 일반 반려견과 다르게 인간이 부여한 임무에 구속된 처지여서 임무와 관련된 규율을 내면화하게 할 최소한의 ‘조작적’ 기제들이 훈련에 사용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견이 길러지고 부려지는 전체의 과정을 일별하며 안내견은 임무상 ‘집중 장애’ 요인인 식욕과 변의, 호기심과 사교성 등의 동물적 본능을 반려인의 명령대로 억제하게끔 훈육된다는 중요한 사실에 주의를 환기했다.

그러나 필자는 이로부터 인간의 안내견 사용이 윤리적으로 부당하며 따라서 폐지돼야 마땅한 관행이라는 결론을 끌어내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안내견은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윤리적 ‘고기능’을 수행하며, 이런 경우 필자는 장애인의 기본권과 안내견의 복지가 양립되는 조건을 적시하는 방향으로 문제 해결을 도모함이 가장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대응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조건은 안내견이 일상에서 당하는 ‘본능의 억압’을 최소한도로 제한하는 규범적 기준선 역할을 부여받는 셈이다. 이러한 취지 아래 필자는 그 조건을 전술한 두 가지, 즉 ‘인간은 안내견의 혼신을 반려동물에 대한 획득의무의 이행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것과 ‘안내견의 훈육에 물리적 강압이 사용돼선 안 된다’는 것으로 테제화해 제시했다. 이로써 필자는 안내견을 대하는 반려의 손길이 학대의 채찍으로 표변하지 않도록 인간의 행동들을 정제할 두 개의 윤리적 거르개를 만들어 내놓아 본 것이다. 이것들은 안내견 학교의 운영 지침에 안내견의 처우와 관련한 세부 항목으로 명문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주지하다시피 개들은 어차피 인간과 공생할 운명이다. 그들은 늑대의 야성을 잃었고, 그리하여 야생의 자연에선 생존하기 어려운 집짐승이 되었다. 그 결과 그들은 인간의 반려로만 안전한 생애를 보장받게 되었다. 이러한 공생에는 규칙이 필요하다. 필자가 태어날 때 소속될 가문과 가풍을 선택하지 않았듯 노벨도 태어날 때 자신이 수행할 반려 역의 상대와 종류를, 말하자면 누구의 어떤 반려가 될지를 선택하지 않았음은 자명하다. 노벨은 운명처럼 안내견 학교의 손안에서 태어났고, 이것은 노벨에게 일평생 지키고 따라야 할 공생의 규칙을 배정한 생의 출발 신호였을 것이다. 롤랜즈의 늑대는 사는 동안 원 없이 자유를 누린 것 같아도 야생 상태라면 누렸을 사냥 본능과 방랑 본능을 제한하는 공생의 규칙에 굴복함으로써 섭식과 안전을 보장받았을 것이다. 노벨 또한 다양한 본능의 억압을 수반하는 훈육의 규칙에 복종함으로써 섭식과 안전을 보장받은 것이다. 어느 경

우건 필자는 공생의 규칙을 따르게 할 ‘시민 교육’이 반려동물에게 불가피하다는 점, 그리고 이 교육의 목적은 반려동물을 지배하기 쉬운 대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상대로 만드는 것이어야 함을 부각하고자 했다.

끝으로 노벨이 안내견 학교의 관문들을 끝까지 통과해 안내견이 되었다면 일반 반려견으로 바뀌어 있는 지금의 삶보다 더 불행한 삶을 살게 됐을까? 이것은 인간인 필자가 어떻게 해도 알 수 없는 안개 속 신비로 남게 될 것 같다. ‘아직은’이 아니라 ‘영원히’ 그럴 것이다. 과학자들이 공식적으로는 배척하면서 동물 실험을 정당화할 때는 은근히 의존하는 의인관(anthropomorphism)마저 그 문제에 관해서는 발언권이 크지 않을 것이다. 인간과 인간 외의 동물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지만 얼마큼 같고 얼마큼 다른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를 과학이 ‘화정’할 수 있는 날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는 것만이라도 잘해야 하지 않을까? 어떤 형태의 반려동물이건 그 동물의 기본적 욕구를 돌보고 가능한 한 그 삶을 전보다 더 낫게 만들어 준다면, 그 동물을 완력과 매질로 굴복시키지 않고 변함없는 애정과 신뢰로 기대를 표현한다면, 동물은 어쨌거나 최선은 아닐망정 최악에서 꽤 먼 삶을 그럭저럭 살아갈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기대로 지금은 다른 이의 손안에서 나이 들어 갈 노벨에 대한 미안함을 더는 한편, 허구한 날 명령하고 꾸짖기만 한 퍼피 워커의 때늦은 후회감을 달랠 따름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및 논문

- 김 훈, 『개: 내 가난한 발바닥의 기록』, 푸른숲, 2005.
- 우석영, 『동물 미술관』, 궁리, 2018.
- 하우종, 『나는 안내견 공부 중입니다』, 알에이치코리아, 2012.
- 홍하일, 「맹인 안내견에 대해서」, 『대한수의사회지』 제32권 제4호, 대한수의사회, 1996.
- Gaita, Raimond, 변진경 역, 『철학자의 개 — 곁에 있는 동물들과 함께 철학하기』, 돌베개, 2018.
- Montalván, Luis Carlos / Witter, Bret, 조영학 역, 『기적의 튜즈데이』, 챔앤파커스, 2013.
- Rachels, James, 김성한 역, 『동물에서 유래된 인간: 다윈주의의 도덕적 합의』, 나남, 2009.
- Rowlands, Mark, 윤영삼 역, 『동물의 역습』, 달팽이, 2004.
- Rowlands, Mark, 강수희 역, 『철학자와 늑대』, 추수밭, 2012.
- Rowlands, Mark, 윤영삼 역, 『동물도 우리처럼』, 달팽이, 2018.
- Serpell, James, 윤영애 역, 『동물, 인간의 동반자: 동물과 인간, 그 교감의 역사』, 들녘, 2003.
- Singer, Peter, 김성한 역, 『동물 해방』, 인간사랑, 1999.
- Singer, Peter, 김성한 역, 『동물 해방』, 연암서가, 2012.
- Jonas, Hans, *Das Prinzip Verantwortung: Versuch einer Ethik für die technologische Zivilisation*, Insel Verlag, 1979.
- Regan, Tom, *The Case for Animal Right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4.

2. 기타

<https://mydog.samsung.com>(‘삼성화재안내견학교’ 홈페이지)

<Abstract>

An Ethical Examination of the Companionship between Humans and Animals

– Focused on the Case of Guide Dog

So, Byung-chul

The aim of this essay is to examine whether the way how the guide dog as a specific model of companion animal is treated by humans can be ethically justified or not as an extension of the recently activated animal ethics debate. First of all, I pointed out the two ‘obtained duties’ which humans should accept when they adopt an animal as their companion. The one of the two is the ‘duty to satisfy the basic needs of that animal’, and the other is the ‘duty to make its life the better than before wherever possible.’ Then, can the guide dog be regarded as a case of animal use fulfilling the two duties? In order to answer this question, I passed my eyes over the whole process which a dog undergoes to be trained and used as a guide dog by humans, and simultaneously directed my attention to the serious fact that the guide dog is disciplined to repress its natural instincts such as the appetite, the urge to urinate or defecate, the curiosity and the sociality regarded as the distraction factors in doing its job according to human dictation.

Nonetheless, I did not reach the conclusion that human use of guide dog is an ethically unjustifiable practice and therefore must be ceased, because I think that the guide dog plays an ethically significant role of

protecting the basic human rights of the handicapped, and in this case, we should solve the problem toward clarifying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basic human rights of the handicapped and the welfare of guide dogs can be compatible with each other. Therefore, those conditions must function as the normative limit lines which help to keep the daily ‘repression of instincts’ of guide dogs to a minimum. With this intention I classified them roughly into the following two and presented them one after another: the one of them is that humans should compensate the guide dogs for their devotion with the fulfillment of the above-mentioned ‘obtained duties’ to companion animal, and the other is that humans should not use any physical coercion in disciplining the guide dogs. Hereby I tried to present the ethical filters with which humans could refine their behaviors so that their companionate hands held out to guide dogs cannot change suddenly into the abusive whips.

Key words : Companion Animal, Obtained Duties, Guide Dog, Repression of Instincts, Basic Human Rights of the Handicapped

소병철

순천대학교 인문예술대학 철학과 조교수

(57922) 전남 순천시 중앙로 255(석현동) 순천대학교 인문예술대학 철학과

전자우편: oeros10@hanmail.net

이 논문은 2019년 2월 23일 투고되어 2019년 4월 10일 심사 완료하였으며, 2019년 4월 16일에 게재 확정 통보하였음.